

건축사 행정처분에 대하여

On the Administration of Licence for Architects

박성근 / 서울시 송파구청 건축과장
by Park Seong-Keun

건축사중 48%의 문제

건축사법 제28조 규정에 의한 건축사 사무소의 등록취소, 업무정지 등 행정처분의 대부분은 공사감리중 건축법 위반사항 적출에 기인하고 있다.

97년도 서울시 위법건축사 행정처분 현황을 보면 총 1,297건을 처분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이는 서울시 등록 건축사 2천7백여명의 48%에 해당하는 것으로 건축사중 절반가량이 행정처분이라는 불명예스러운 일에 관여되었다고 볼 수 있다.

물론 이것은 97년도 한 해에만 국한된 건수이고 또 건축사 한 명이 여러 건의 행정처분을 받는 일도 많아서 이러한 비율대비는 단순한 가능자에 불과하다고도 볼 수 있으나 건축사에게 있어서는 그 업무수행상 맞닥뜨릴 수밖에 없는 주요 현안임은 분명하다.

(단위 : 건)

합계	등록취소	업 무 정 지				경고
		소계	2월 이하	3월~5개월	6월~1년	
1,297	12	703	599	98	6	582

〈97년도 서울시 위법건축사 행정처분 건수〉

몇가지의 불만들

이에 대해 일선 구청에서 건축사행정처분 업무를 해오면서 들은 건축사쪽 얘기는 대체적으로 불만스런 것이다. 첫째 행정처분의 기준이 지나치게 경색적이라는 지적이다. 건축법위반에 대한 건축사법 시행규칙상의 처분기준을 보면 위반사항에 따라 건축사에게 최저 업무정지 2월에서 등록취소까지 처분토록 되어 있고 각 위반사항별로는 처분 개월 수가 명시되어 있는데 예를 들어, 감리중간 보고서를 제출치 아니한 경우 업무정지 5월로 규정되어 있으므로 5월로만 처분이 되고 5월 이상으로도 5월 이하로도 처분되지 않는다. 다만 위반행위의 동기, 내용과 시정노력 등 정상을 참작하여 업무정지기간의 2분의 1 범위내에서 처분을 경감할 수 있는데 이마저도 가급적 경감처분을 지양하고 무거운 처분을 내려야 한다는 관청의 분위기 때문에 건축사에게 우호적인 처분을 기대하기는 어렵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경미한 위반인 경우 행정목적 달성상 불문 또는 경고로 처분 가능한지에 대한 질의에 대해 96. 8. 7 건설교통부에서는 "건축사법 제28조 규정에서 처분권자에게 건축사의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의 재량권을 부여하고 있으므로 처분여부는 처분권자 판단, 결정할 사항"임을 회신한 바 있다.

결국 처분 양정(量定)은 불문, 경고 아니면 최저 1월(2월을 경감할 경우)이상이 될 수밖에 없어, 대개의 법률상 벌칙규정이 어느 상한선이하로 처분하도록 한 것과 건축사법 자체에서도 "처분할 수 있다"는 재량적 표현을 했고 처분전 청문을 통해 의견진술토록한 규정을 둔 취지를 볼 때 시행규칙상의 처분기준이 경색적이라는 주장은 일용 이유가 있다고 본다.

둘째는, 위반행위 관계자간의 형평성 문제를 들고 있다. 대부분의 건축법위반사항은 건축주나 시공자(건축업자)가 위반주체가 되고 감리자는 이를 구두 또는 문서로 저지밖에 할 수 없는 입장인데도 건축주, 시공자는 몇 백만원 이하의 벌금에 그칠 뿐이고, 건축공사로 인한 경제적 이익은 챙기는 반면 감리자는 업무정지라는 회복키 어려운 정신적, 물질적 손실을 입는다는 것이다. 즉, 곳간의 양식을 훔친 사람보다 이를 지키는 사람이 더 큰 벌을 받는 꼴이라는 비유를 듣기도 한다. 위반빈도가 높은 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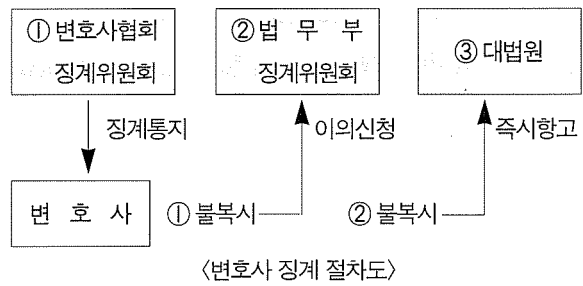
규모 건축공사의 실제 시공자에 대해서도 “현장관리인”이라는 일반인들에게는 생소한 명칭으로 규제하는 것 보다는 엄연한 시공자로서 건설산업기본법의 틀 안에서 통제할 수 있도록 하는 조치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을 한다. 또 한가지는 감리업무의 책임한계를 시기적으로 보다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건축법에 규정된 위반공사에 대한 감리건축사의 조치 흐름을 보면 “위반공사발견→시공자에게 시정 요청→시정시공사중지요청(서면)→불응시 시정요청 명시기한 완료후 7일 이내 위반공사 보고서 제출”로 되어 있는데, 경미한 사항이라면 몰라도 보통 구조물 철거가 수반되는 사항이라면 이러한 조치 흐름을 따르다 보면 한달 또는 몇 달이 걸리게 되며 비상주 감리 상태에서 시공자가 계속 공사를 강행하면 위법보고서 제출도 못해보고 공사가 완료되는 경우가 허다하다는 것이다. 그 사이에 관청의 점검으로 위반사항이 지적되면 그대로 행정처분 절차가 이루어지고 이에 대한 해명에 시간과 노력을 쏟게 되고 시공자에게는 애원하다시피 시정해 줄 것을 간청하는 현실이다보니, 내용증명과 인감첨부 자인서라는 저품격의 서류에 매달리게 된다는 얘기가. 이에 대해서는 공사감리기준에 위법공사 보고에 대한 시기, 방법 등을 보다 구체적으로 정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있다. 왜냐하면 위법공사 보고서 제출시기를 최초 시정요청후와 공사중지명령후로 이중적으로 규정되어 있고 감리자가 부여하는 시정기한도 주관에 따라 차이가 날 수 있기 때문이다. 또 최초로 위반공사 발견 및 시정지시로부터 최후의 시정명령기한 만료후 7일까지의 기간은 감리건축사에게 보장된 기간이므로 이 기간내의 시정조치중인 사항은 행정처분대상이 되지 않음을 분명히 해 두어야 하고 처분관청에서도 이를 감안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 외에도 건축사의 업무는 처분시효가 없어 이미 오랜기간이 지났는데도 건축사의 귀책여부를 가리는 경우가 있다는 것과, 행정처분이 단심(單審)으로 결정된다는 것 등등의 얘기가 더 있었다.

변호사와 일본(日本)건축사의 징계제도

그렇다면 변호사의 징계제도도 어떨는지, 또 일본의 건축사법규정에서 징계에 관한 규정은 어떤 차이가 있는지 살펴보는 것도 의미있는 일이라 생각된다. 먼저 변호사법을 보면 변호사의 징계는 변호사협회 징계위원회에서 결정하도록 되어있고 징계 불복시에는 3단계의 심의절차가 규정되어 있다. 참고로 변호사협회 징계위원회는 변호사로만 구성되는 것은 아니고, 법원과 법무부에서 각각 추천하는 판사, 검사도 포함되어 있으며 징계의 종류는 제명, 2년이하의 정직, 과태료, 견책 등이 있다. 또한 변호사의 징계는 변호사협회의 청구에 따라 변호사협회 징계위원회에서 징계결정을 하게 되는데 징계사유가 있는 날로부터 2년이 경과되면 징계청구를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건축사에 대한 처분과의 차이점을 요약해보면 협회 자체에서 징계를 한다는 것, 3단계의 심의절차가 있다는 것, 징계의 시효를 인정한다는 것으로 대별할 수 있는데 이러한 내용을 건축사법에서도 수용한다면 건축사에게 있어서는 모두 포지티브(Positive)한 것이 된다는 데에는 이견이 없을 것이다.

다음으로 일본의 현행 건축사법 제10조의 징계규정을 보면 건축사가 건축관련 법령의 규정을 위반할 때에



는 면허부여 관청에서 계고, 1년이내의 업무정지, 또는 면허취소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특이한 것은 업무정지나 면허취소를 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건축사 심사회(審査會)의 동의를 얻도록 하고 있는 것이다. 건축사심사회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에 각각 설치되어 있으며 위원은 10명이내인데 그중 과반수는 건축사중에서 나머지는 학식과 경험이 있는 자 중에서 임명된다. 또 건축사심사회는 건축사시험 실시에 관한 업무도 맡고 있어 건축사 중심의 심사회가 건축사 선발과 징계업무를 동시에 간여하고 있는 것이다.

건축사협회의 자율성 높여야

위 사례비교에서 고도의 전문성과 식견을 갖춘 단체의 구성원에 대한 징계는 스스로 자율성을 발휘토록 하여 단체자체의 권위향상과 사회적 책임의식을 높히도록 하는 방안이 적극 검토되어야 할 필요성을 느끼게 한다. 우리나라의 건축사법은 어느 면에서는 매우 과감한 자율성을 건축사와 건축사협회에 부여하고 있다. 그 예로써 건축허가서와 사용승인시의 현장조사, 검사 및 확인업무를 건축사가 허가신청을 대신하여 할 수 있도록 한 것과 건축사보의 신상관리, 외국건축사 면허 취득자의 업무수행신고수리와 건축사자격시험 및 건축사 예비시험관리 업무를 건축사협회에서 관장토록 한 것이다.

이 정도면 건축사징계에 관한 업무도 시기적으로 건축사협회에 위탁할 단계에 와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든다. 현재 건축사의 등록, 변경사항과 처분사항은 건축사협회에서 통합전산관리되고 있다. 행정처분에 있어 전문성과 형평성을 보다 더 기할 수 있고 국제화, 개방화에 따른 기술단체의 자체대응력을 높임과 동시에 작은 정부를 지향한 공공업무의 과감한 민간이양이라는 현 시류에도 부응할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해서 건축사행정처분업무를 건축사협회에 위탁하는 것을 제안해 본다. 아울러 건축사등록업무까지 위탁하는 것도 그리 우려할 일은 아니라고 본다. 건축사의 시험관리에서부터 등록·징계업무까지를 협회에서 일괄관리하게 하고 정부는 엄격한 감독권한을 갖고 있으면 되리라고 생각한다.

맺는말

그러나 이와같은 제안에는 분명한 전제가 있다. 다음아닌 건축사 개개인의 뼈아픈 자기발전 노력을 통한 건축사협회의 위상이 제고되어야 하는 것이다. 철저한 공인의 식으로 설계나 공사감리업을 수행하면서 전문가로서의 사회적 역할에 충실한 모습을 좀 더 보여 주어야 할 것이다. 우리 건축사의 자질과 능력을 볼 때 이러한 것은 의지만 갖는다면 손쉽게 이루어낼 것이라고 믿는다.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더욱 분발하는 건축인의 자세가 기대된다.